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2005. 8.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 2. 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고

○ 2006. 4. 7일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로 개정(안 제1조)

○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으로 개정(안 제3조)

○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안 제4조)

○ 제5조(회기수당 지급기준) - **삭제**

○ 종전에는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에 따라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별표1)
- 붙 임 : [별표1]

3. 개 정 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상황 : 예산부서와 합의함

다. 참고사항 : 해당없음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로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중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98만원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5조(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성주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월정수당---------- ---------- --------.	수당명칭변경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으로 한다.	의정활동비통합
제4조(회기수당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할 경우에 는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만 계산한다. 다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98만원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수당명칭변경 및 금액획정
제5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회기수당 지급기준) - 삭제	조항삭제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현 행

(단위: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안

(단위: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1. ----------출석 및 여행(성주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 12㎞ ----- 현지교통비와 ----------.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삭제)-------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

----------.

개정이유

의원과 의회의장단과 구분을 폐지하고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